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내용 구체화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6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내용 구체화	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7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내용 구체화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제37조제1항에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u>아니하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u>
1. ~ 3.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바(현행법 제5조제1호), 근로자측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①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②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며, ③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증명책임의 귀속) 보면서도, ①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
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증명의 정도), ②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증명의 기준)고 판시²⁾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
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³⁾하는 등 업무와 재
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판례 법리를 실시한 바 있
음.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 판시 경향을 반영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 상
당인과관계 판단 시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복지공
단 등에서 산재급여 심사를 할 때 완화된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심사

2) 대법원 2017. 8. 29. 2015두38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임.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의 일시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병되는 것으로서 질병 유발 요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잠복기를 거쳐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유해인자 취급의 시기와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위험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사업주에 편재되어 있거나,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등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고려하면⁴⁾ 개정안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이미 판례와 같이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현행 법체계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재해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는 입장임.

4) 이동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증명 책임”, 월간노동법률, 2018.7.

문 의 처
02)6788-5538